

명한다.

- ③ 연구부는 연구 및 연구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경제문헌자료센터는 문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작과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 5 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보조연구원 약간인을 둔다.  
 ② 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

정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조교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을 보조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소장, 연구부장, 경제학과장, 무역학과장, 농경제학과장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 8 조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9 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공개강좌)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학칙 제100조에 의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5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서울대학교상과대학 한국경제연구소가 보편하고 있던 도서, 물품등은 연구소에 이관된다.

1975.09